

영등포구의회  
제210회 임시회

『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10. 22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# 『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25호로 2018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기 불황으로 자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혜를 주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○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요구 내역

- 변경 대상: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
- 변경 요구액: 1,000백만원 융자금 증액
- 기금의 용도
  -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, 정책사업의 2/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,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- 이는,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임.
- 주요 내용으로는, 기금의 총 조성액은 137억 5,600만이며, 당초 201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기금 운용액은 82억 3,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, 이 중 용자금 50억원을 6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하고, 예치금 32억 3,400만원을 22억 3,400만원으로 10억원 감액하는 것으로서,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한 것임.
- 검토 결과,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용자지원 확대를 통해,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등 성장을 유도함으로써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향후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임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##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# 제7조의2(융자계획수립 및 추가융자)

① 구청장은 매년초에 융자총액, 융자한도, 융자조건,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.